

2-2. 입양휴직

가. 근거

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제1항제7의2호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5조제1항제6호의2호

나. 휴직사유: 만 19세 미만의 아동(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대상 제외)을 입양하는 경우

다. 휴직의 요건: 만 19세 미만의 아동(육아휴직 대상 아동은 제외)을 입양하는 남·여 교육공무원

라. 휴직기간 및 횟수

- 1) 법정휴직기간: 법 제44조제1항제7의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.(법 제45조제1항제6호의2호)
- 2) 휴직의 횟수: 분할사용 불가

마. 휴직신청서류

- 1) 휴직신청서: 소속, 직, 성명, 휴직사유, 휴직기간, 휴직목적 등을 명시
-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
- 2) 휴직사유 입증서류
 - 가)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
 - 나)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- 3) 휴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 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함(「교육공무원 인사 관리규정」 제25조)

바. 복직절차

- 1) 법 제44조제1항제7의2호의 휴직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,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(복직원 제출)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
- 2)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.
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

사. 기타

- 1) 입양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
 - 가) 경력평정: 휴직기간 전부 산입
 - 나) 호봉승급: 전 기간 호봉승급 인정
- 2) 결원보충: 결원보충 안함.
- 3) 입양휴직 보수: 지급 안함. 단,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